##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박범계·조 국·이기헌

오세희 • 박민규 • 이해식

강준현 · 오기형 · 김남희

김기표 • 박해철 • 복기왕

권칠승 • 정진욱 • 박정현

박지혜 • 김승원 • 손명수

박희승·허 영·조계원

김영배 · 임호선 · 김용만

이학영 · 이수진 · 송재봉

이병진 • 박용갑 • 이재관

문금주 · 조인철 · 이광희

황명선 · 양부남 · 장종태

위성곤 · 김태년 · 이정문

박균택 • 이원택 • 민형배

정준호 • 박주민 • 안태준

황정아 · 문진석 · 박 정

신정훈 · 박선원 · 이재강

이연희 · 김 현 의원

(5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 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을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6. 제12조의3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
- 17. 제24조 상시 공직감찰에 따른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 18. 제35조에 따른 고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4(감찰관 임용) ①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찰담당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 ② 감찰관은 감사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 자를 임용하며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에서 임용한다.
  - ③ 구체적인 처우 및 모집·임용절차 등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 2.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3.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4.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 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 6.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

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7.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대상자 또는 감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직무감찰 중 긴급을 요하여 미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개시 직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다.
  - ⑥ 상시 공직감찰은 제1항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한다.
  - ⑦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 1. 행정기관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감 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감사원은 현장에서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의 대 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어 반드시 기간 을 정하거나 또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별

추출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복제본 생성 및 디지털 자료 탐색, 추출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진술 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제기 등)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및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관계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은 감사과정 중이라도 부당한 조사절차,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장은 접수된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중 "이를"을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내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감사원은 원장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이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27조제4항을"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한다.

4.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수행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	제12조(의결사항) ①
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u>감사정책 및 주요</u>	· 1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의 변경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6. 제12조의3에 따른 감사위원
	회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u>사항</u>
<u>&lt;신 설&gt;</u>	<u>17. 제24조 상시 공직감찰에 따</u>
	른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u>18.</u> 제35조에 따른 고발 등에
	관한 사항
<u>16.</u> (생 략)	<u>19.</u>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2조의3(의결의 공개 등) ① 감
	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개한
	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
	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
	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

<u><신</u> 설>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 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 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16조의4(감찰관 임용) ① 감사 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찰담당 감찰 관을 원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② 감찰관은 감사원 외부를 대 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 여 적격자를 임용하며 10년 이 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 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구체적인 처우 및 모집·임 용절차 등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 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 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

- 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 2.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 차를 준수한다.
- 3.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실시한다.
- 4.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 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 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 6.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 화되도록 한다.
- 7.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감사의 대상자 또는 감 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직무감찰 중 긴급을 요하여 미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 기 어려운 상시 공직감찰의 경 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 이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개시 직후 감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상시 공직감찰은 제1항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 한다.

①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 1. 행정기관에서 자체감찰을 수 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

인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원은 현장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감 사의 대상인 직무수행과 관련 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 어 반드시 기간을 정하거나 또 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 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 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별 추출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저 장<u>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복</u> 제본 생성 및 디지털 자료 탐 색, 추출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 고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 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 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 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열람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u>이를</u> 수사기관에 고발하 여야 한다. <u><</u>후단 신설>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제기 등)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및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관계자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 참여하게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은 감사과정 중이라도 부당한 조사절차,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장은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 · 적법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고발) -----

\_\_\_\_\_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_\_\_\_\_

--. <u>그 밖의 중간수사결과 발</u> 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 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 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 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 ② · ③ (생 략)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1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직 • 간 접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내부 회계검사 및 직 무감찰의 보고) 감사원은 원장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 다만, 이 법 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이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생 략)

- 4.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u>수행한 자</u>
- ② <u>제27조제4항을</u> 위반한 자는 ② <u>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u>

---.

③ (현행과 같음)